의안번호	제436호					
의결연월일	2017. 12. 7					

- 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-

## 심 사 보 고 서

#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17. 11. 20 예산군수

나. 회 부 일 자: 2017. 11. 22

다. 상 정 일 자: 2017. 12. 7

제236회 예산군의회(제2차 정례회)
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### 2. 제안설명 요지 [재무과장 : 신 경 호]

#### 가. 제안이유

○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『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』을 지방자치법 제39조,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,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## □ 관리계획 내역

○ 일반회계

재산현황 필지 면적 금액 구분 사업명 합계 1건 8,011 301,000 21 덕산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토 8,011 301,000 취 21 매 확충사업 관련 부지 매입 ス 입 토 득 ス 건 신 축 물 2건 합계 10 7,351.2 2,940,410 토 예산지구 내 공유(일반)재산 매각 3,007.2 2,132,000 처 지 봉산면 고도지구 신규마을 토 매 808,410 분 10 4,344 각 ス 주택용지 분양 매각 7] 타

(단위: m², 천원)

#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

[2017년도 관리계획변경(3차) 총괄표]

회계명 : 일반회계 (단위 : m², 천원)

		· 본 년 기기 당초 계획(A)			금회 변경 계획					합계(A+B-C)			
구분			II	금액	증가(B) 감소(C)					П / 11 (1.1	2 0,		
			면적		건수	면적	금액	건수	면적	금액	건수	면적	금액
총계		6	131,218.1	17,484,988	1	8,011	301,000	2	7,351.2	2,940,410	5	131,877.9	14,845,578
	소 계	6	131,218.1	17,484,988	1	8,011	301,000				7	139,229.1	17,785,988
취	토 지	4	127,985.1	9,686,074	1	8,011	301,000				5	135,996.1	9,987,074
득	건 물	2	3,233	7,798,914							2	3,233	7,798,914
	기 타												
	소 계							2	7,351.2	2,940,410	2	7,351.2	2,940,410
처 분	토 지							2	7,351.2	2,940,410	2	7,351.2	2,940,410
	건 물												
	기 타												

#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복 준 수)

○ 이 계획안은 덕산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위해 덕산면 둔리 산49-4번지외 20필지 8,011㎡를 3억 100만원에 매입하고, 예산경찰서에서 민원실 및 주차장 설치를 위해 우리군에 매각해줄 것을 요청한 예산읍 예산리 773번지외 2필지 3,007㎡를 21억 3,200만원에 매각하고, 봉산면 고도지구신규마을 주택용지를 분양코자 봉산면 고도리 60-2번지외 9필지 4,344㎡를 8억 841만원에 매각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한 사안으로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시 관리계획을 수립(변경 포함)하여 예산 의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 재산의 범위는 취득의 경우 1건당 가격기준 10억원 이상・면적 기준 1,000㎡ 이상, 처분의 경우 1건당 가격기준 10억원 이상・면적면적기준 2,000㎡ 이상이며,

제출된 3건의 안건 모두 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므로 공유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이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- 4. 질의·답변요지
  - O 생 략
- 5. 토 론 요 지
- O 없 음
- 6. 심 사 결 과
  - 원안가결
- 7. 소수의견 요지
  - O 없 음
- 8. 기타 필요한 사항
  - O 없 음